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대구)두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

2. 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1. 07. 13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

2020.3.13.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「여신업무방법서」 제1편 제5장 제3절 제3조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2% 이내에서 대출 및 차주 유형*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조합 이사회가 정해야하고①,

* (담보대출 VS 신용대출), (기업대출 VS 가계대출), (고정금리 VS 변동금리)

「여신규정시행세칙」 제10조,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제2조 등에 따르면 대출일로부터 ○년이 경과하고 최초 대출금의 ○○%이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함에도②,

① 두산천주교회신협은 「여신규정시행세칙」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단일 요율(2.0%)로 정하고 있을 뿐, 대출 및 차주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지 않고 있으며,

②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차주 ◇◇◇ 등 대출 □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○년이 경과하였고 대출금의 ○○% 이내로 상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에 해당함에도 중도상환수수료 ○○○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,

두산천주교회신협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, 과다 수취한 수수료는 차주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규 등에 따라 차주가 과도한 대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